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6. 20(목) 10:00

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
(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54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8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28.

2. 제안이유

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의 지원을 법제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 ~ 제4조).
- 다.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(안 제5조 ~ 제6조).
- 라.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(안 제7조).
- 마.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, 운영, 해촉 등(안 제8조 ~ 제11조).
- 바. 표창(안 제12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4조, 제7조, 제8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5. 29. ~ 2024. 6. 5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제정안은 금천구민의 지역문화의 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생활문화 장려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
- “생활문화”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·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함

2) 기본계획 및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(안 제5조 ~ 제6조).
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6조제4항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
- 「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 위임조항에 따라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

3)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(안 제7조).

-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사업을 명시함

다. 검토의견

- 생활문화는 주민이 거주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시책 마련이 요구됨.

금천구는 마을활력소 어울샘을 통하여 동아리 지원, 생활예술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.

본 조례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제정하여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지역문화진흥법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(생활문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.

③ 개인·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